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9. 12.



순 서

민생경제・일자리분야

1.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확대·개편 시행 ·················· 1
2.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2
3.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3
4. 단기취업특강 운영 4
5.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 서비스 확대5
6.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6
7.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확대7
8. 제주 전체 수출기업 무역보험 안전망 구축8
9.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9
10. 온·오프라인 융합 무역실무 교육 ······ 10
11.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최초 시행 11
복지・보건・안전분야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12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3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대 14
4. 장애인연금 지원 15

5.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16
6.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7
7.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시행18
8.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시설개선 및 입주자격 완화… 19
9.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20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21
11.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운영 22
12. 정신질환자 응급병상 확보 및 응급개입 체계 마련 23
13.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24
14.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 확대 25
15.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행 ······ 26
16. 위생등급 지정 대상 확대 27
17. 2020년 달라지는 소방 관계 법령 28
농축산 분야
1.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도에서 일괄 추진 29
2. 제주형 사회적 농업 추진 30
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31
4. 친환경농산물 (학교·어린이집) 급식 지원 단가 인상 ······ 32
5. 비 인가 대안학교 친환경농산물 • 무상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 … 33

6.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 34
7.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35
8.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36
9.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37
10. 만감류 상품기준 설정 38
11. 비상품 유통 등 과태료 1,000만원까지 상향 39
12.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일정 변경40
해양수산 분야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상향 지원41
2.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지원42
3.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단가 상향 지원43
4.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 44
5. 양식산업발전법('19.8.27.제정) 본격 시행 45
6.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제도 도입46
주거・교통 분야
1.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47
2.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확대48
3.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49

4.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 50
5.	경사진 주차장 고임목 등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51
	환경보전 분야
1.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52
2.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53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54
	문화체육 분야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55
2.	제주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부감면(75%) 56
3.	2020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57
4.	2020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58
	기타
1.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 59
2.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지원표시) 의무화 60
3.	2020년 민수용 도시가스(LNG) 공급 전환 61
4.	국가유공자 등 수당 상향 및 지원 확대62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확대·개편 시행

일자리과 고용지원팀장 (710-4591)

실업자 및 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기능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해 적합 훈련 수강 시 훈련비 및 훈련수 당을 지급하는 등 개인의 생애단계별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

□ 사업개요(지원내용)

-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75세 이상자 제외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갱신 가능) 계좌 적합훈련 수강 지원
- 고용센터의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과정 선택 수강**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 2주 상담 (140시간 미만 과정 상담 면제)
-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만 6천원 지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단, 고용형태 및 훈련 시수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 O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Ⅱ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도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훈련 수강이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원한도는 '200~ 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개인의 자발적 평생 교육훈련설계 지원 마련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일자리과 고용지원팀장 (710-4591)

(사업요지)

중장년을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근로자 숙소 임차 또는 주거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장년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 유도 등으로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견인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

Ⅱ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O 사업대상 : 만40세 ~ 65세 중장년 근로자에 숙소(주택보조금)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숙소임차료의 60% 또는 주택보조금의 80%,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 (매월)사업신청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분기별)지원금 신청 →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

Ⅱ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중장년 근로자에 주거지원(숙소 또는 주택보조금)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택보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일자리과 혼디내일센터팀장 (710-4480)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출 도모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①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주민등록기준, 6개월 이상)
 - ② 졸업 또는 중퇴후 2년 경과
 - ③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④만 19~34세 청년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
 - * 지원기간 중 취업(창업)시 지원 중단 → 취업(또는 창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 O 지원내용 : 구직활동 관련 비용 지원(일부 업종 제한)
- O 지원방식: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후 다음달 사후환급

Ⅱ **시 행 일 :** '20. 1월

- ❖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기간 확대
 - ('19) 상반기 3회 → ('20) 매월

단기취업특강 운영

일자리과 혼디내일센터팀장 (710-4480)

일반구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기술 향상 및 생활에 필요한 교양관련 특강 운영

Ⅱ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매주 수,목요일 10시~12시)

O 대 상 자 : 일반구직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O 내 용: 구직기술 향상 및 교양강좌

- 면접스킬, 직장생활 매너, 노후준비 및 신용회복 관련 등

■ 시 행 일 : '20. 1월

- ❖ 단기취업특강 운영장소 확대
 - ('19) 제주시 → ('20)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 서비스 확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710-2511)

지역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농가·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Ⅱ 사업개요

- O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O 수행기관: 제주은행, NH농협은행
- O 가 맹 점: 5개소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오프라인 매장(본점, 컨벤션점, 고양시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매장(e-제주몰)
 - 알뜨르 농부시장(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 O 사업내용
 - 가맹점에서 지역생산품을 구매하고 카드결제시 청구할인
 - 구매(카드결제)액의 8% 범위에서 청구할인(1일 최대 3만원 한도)
- O 대상카드 : 제주은행카드, NH농협채움카드

Ⅱ 시 행 일 : '20. 1월

- ❖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 확대 (5~8% ⇒ 8%, 1일최대 3만원)
- ❖ 지역생산품 구매비용 할인 서비스 대상 가맹점 확대 (5개소 ⇒ 사회적 경제기업 등 추가 예정)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확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710-2511)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착한가격업소 제도 안정적 정착 유도 및 개인서비스업 물가안정 도모

□ 사업개요(지원내용)

- O 지원대상: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
- O 지원내용(인센티브 내용)
 -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작 및 업소 부착
 - 상수도요금 감면 (업소별 상수도 사용량 최대 50톤 감면)
 - 각종 병해충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분기 1회)
 -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종량제봉투 등)
 - 전기요금 지원 (4개월, 월 최대 5만원)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지원(리플릿 제작, 언론홍보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등

Ⅱ 시 행 일 : '20. 1월

- ❖ 착한가격업소 방역소독 확대(연 2회 ⇒ 연 4회)
- ❖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지원(4개월, 월 최대 5만원)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확대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장 (710-2625)

경쟁력 있는 제주대표상품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투자 와 육성으로 제주 수출 기업의 역량과 실질적 성과 향상

Ⅱ 사업개요

- O 주요내용
 - 제주 스타상품 기업 선정(재지정을 통해 2년간 유효)
 - 기업선택형 자율마케팅비 년 20백만원이내(2년간 40백만원이내)
 - 스타상품 기업 인증패 수여
 - 해외 제주상품 전시판매장내 홍보공간 마련 등
- O 추진 계획
- 제주스타상품 기업 공모 : '20. 1월 *선정 : '20. 2월중
- 온·오프라인 집중 마케팅 실시 : '20. 2월 ~ 12월

■ 시 행 일 : '20. 1월

- ❖ 스타상품 선정기업 지원기간 확대(당해년도→2년간)
- ◆ 스타상품 선정기업(5개사→10개사) 및 마케팅 대상 국가(중국→중국 포함 기타국가) 확대

제주 전체 수출기업 무역보험 안전망 구축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장 (710-2625)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가입절차 없이 도내 모든 수출기업 단체보험 자동가입 및 보험지원 으로 무역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

□ 사업개요(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주에 본사를 둔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 수출기업 ('18년도 기준 250여 도 전체 수출기업 적용)
- O 주요내용 : 일괄 가입방식 단체보험 가입 및 보험혜택 적용
 - 제주 100만불 이하 모든 수출기업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 1백만불 초과 수출기업은 별도 단기수출보험 가입
- 보상한도 : 수출규모에 따라 보상한도 차등지원
 - 10만불(10만불 초과 수출기업), 5만불(10만불 이하 수출기업)

Ⅱ 시 행 일 : '20. 1월

- ❖ '20년부터 수출기업 단체보험은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됩니다.
 - (기존) 보험공모 가입신청- 계약체결 등 한정지원
 - (변경) 제주 100만불이하 모든 수출기업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장 (710-2625)

기업에게는 전문인력을, 제주청년에게는 안정된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주경제의 활력제고

Ⅱ 사업개요

O 기 간 : 2020. 1월 ~ 12월

O 인력지원 : 총 123명(고용유지 113명, 신규채용 10명)

O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참여 확정 시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만18~39세의 미취업자

- O 접수방법: 직접 방문(경제통상진흥원) 및 이메일 접수
- O 지워내용
 - 직원 신규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지원 (최대2년)
 - 청년취업자 교육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

Ⅱ 시 행 일 : '20. 1월

- ❖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 지원인원 : ('18년) 20명 → ('19년) 113명 →('20년) 123명 (신규10명)
- ☞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시, 최대 2년간 1인당 인건비 연2,400만원의 90% 지원

온 · 오프라인 융합 무역실무 교육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장 (710-2625)

제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전문교육을 통해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무역실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지원내용)

- O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O 지원대상: 도내 수출기업 50개사 (기업당 1명)
- O 교육내용
 - 수출입절차 개요 (온라인 20h + 오프라인 6h) : 3~4월
 - 수출입 통관 (온라인 20h + 오프라인 6h) : 5~6월
 - 무역계약 (온라인 16h + 오프라인 6h) : 7~8월
- Ⅱ **시 행 일 :** '20. 2월 (공고 및 선정)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실무 위주의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 그램을 운영, 무역전문인력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최초 시행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산업팀장 (710-2651)

전기차 이용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기반으로 규제문제를 풀어서 획일적인 충전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 하고,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확성화에 기여

□ 특구 내용

- **(지정기간) '19**. 12. 6 ~ **'23**. 12. 5(4년) *실증기간 : '20.1.1~'21.12.31
- (위 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17개 지역(922.084㎡)
- (사업내용) 15개업체, 4개협력기관 참여, 4개실증사업 수행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
-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4건(실증특례 4)
- (총사업비) 267억원(국도비 7:3, 민자 20%이상) * 국비에 따라 변경가능

 ▷ 국비 155억원(58%), 도비 68억원(25%), 민자 44억원(17%)

■ 시 행 일 : '20. 1월

- ❖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제주는 전기차를 위한 전국최고 수준의 전기 차 충전서비스를 위한 실증특례가 적용됩니다
- ❖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2024년까지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710-287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와 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촘촘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Ⅱ 사업개요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
- 급여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 (수급자 선정기준)
 -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Ⅱ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①스크(킈)되 기즈	25~64세에 근로·사업 소득공제 30% 신규 적용			
①수급(권)자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액 확대 (3,400만원 → 4,200만원)			
	주거용재산 한도액 확대 (6,800만원 → 9,000만원)			
②부양의무자 기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제외(단, 고소득·고재산가 계속 적용)			
기준	부양비 부과율 10%로 완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팀장 (710-6681)

(핵심 주요내용)

도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전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Ⅱ 사업개요

O 기 간: '20. 1월 ~ 12월

O 대 상 : 도내 60세 이상 사업 적합자

사업분야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		시장형	취업알선형
참여자격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이상 (일부사업 60세이상)	만65세이상	만65세이상
근무조건	월30시간 (주3회, 일3시간) 연중	월60시간이상 (주5회,일3시간) 10개월	월30시간 (주3회,일3시간) 연중	연중

O 근무 내용

-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 사회서비스형 : 노인맞춤돌볼서비스 보조, 복지시설업무 보조, 시나어컨설턴트 등

- 시장형 : 공동작업장 운영, 매장 운영 등

- 취업알선형 : 필요 수요처에 인력 파견

○ 접수방법 : 읍•면•동사무소, 시니어클럽 등 사업 수행기관 방문

○ 접수기간 : (공익형 등) '19.12.3~'20.12.23 (사회서비스형) '20.1.13~1.23

□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익활동 사업기간 연장 : ('19년) 9개월 → ('20년) 10~12개월

❖ 시호사비스형 참여자격 완화: (19년) 민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20년) 민65세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담당 (710-2791)

(핵심 주요내용)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어르신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한 권역 구분으로 권역별 수행기관 돌봄 책임성 강화

□ 사업개요(지원내용)

O 대 상: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유사 중복서비스 해당자 제외

○ 수행기관 :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O 예 산 액 : 8,886백만원

O 주요내용

-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및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 * 안전지원(방문·전화),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생활교육, 건강지원 등
- 생활권역별 수행기관(10개소) 돌봄 책임기관제 운영
-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Ⅱ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9년) 돌봄대상자: 6,900여명 → (20년) 8,200여명(1,300명 증가)
 (19년) 유사분절적 돌봄서비스 제공 → (20년) 권역별 공공성·돌봄책임성 강화
 (19년) 단순 안부확인가사자원 → (20년) 맞춤서비스제공(안전건강프로그램및가사자원 등)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710-2831)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 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Ⅱ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기준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19년 기준)
 - * '20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할 예정
 - · 수급권자 범위 추가 : 학교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자산 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 → 행정시에서 지급
- O 지 급 액
 - 기초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인/월30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층 최고액 1인/월300.000원(법 개정중)
 - 차상위 초과자 최고액 1인/월257,550원(추후확정)
 - · 부가급여 : 20,000~380,000원 차등 지급
 - · 인상시기 : 매년 1월('19년까지 매년 4월, 법 개정중)

Ⅱ 시 행 일 : '20. 1월

- ❖ 기초급여 인상액 적용대상 확대
 - ('19년) 생계·의료급여 300,0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층 등 253,750원 ('20년) 생계·의료급여 300,00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층 300,000원(법 개정중) 차상위초과자 257,550원(추후확정)
- ❖ 기초급여액 인상시기 변경 : 매년 4월 → 매년 1월(법 개정중)
- ❖ 수급권자 범위 확대 :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20세 중증장애인 추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710-2831)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Ⅱ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 · 투석비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투석 받고 있는 등록 신장장애인
- · 이식검사비 : 등록 신장장애인
- 혈관수술비 : 투석 받고 있는 등록 신장장애인 중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O 지원기준
- · 투 석 비 :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 이식검사비 :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
- O 지급절차
- · 투 석 비 : 의료기관에서 투석실시 후 행정시장에게 청구
- · 이식검사비 : 장애인이 이식검사 실시 후 청구서 및 관련서류 제출
- 혈관수술비 : 장애인이 혈관수술 실시 후 청구서 및 관련서류 제출
- O 청구기한 : 투석, 이식검사 및 혈관수술를 행한 해당연도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 6개월 이내까지 유효)

Ⅱ **시 행 일 :** '20. 1월

- ❖ 이식검사비 : 지원대상자 확대 ('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등록 신장장애인 ('20년) 등록 신장장애인
- ❖ 혈관수술비 신규 지원(1회 20만원한도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활동보조·방문 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미만 등록장애인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 행정시 경유 → (도) 수급자격심의

위원회 심사. 결정 → 행정시에서 지급

O 지 급 액

· 활동지원급여 : ('20.1월 ~) 810천원~6.480천원 차등 지급

· 특별지원급여 : ('20.1월 ~) 270천원~1,080천원 차등 지급

Ⅱ 시 행일: '20. 1월

- ❖ '20년 활동지원 급여 개인별 한도액 인상
 ('19년) 월 610천원~1,530천원 *추가급여 월 130천원~3,539천원
 ('20년) 월 810천원~6,480천원 *특별지원급여 월 260천원~1,037천원
- ❖ '20년 활동지원사 시간당 단가 인상
 (종전) 12,960원 (변경) 13,500원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야간 : 20,250원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 시행

평생교육과 교육지원담당 (710-3627)

도내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에게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를 발급하여 소득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 및 학력격차 해소

Ⅱ 사업개요(지원내용)

- 총사업비 : 2,000,000천원 (재원부담 : 도 50%, 교육청 50%)
- 지원대상 : 도내 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초·중·고등학생,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 O 지원금액 : 초 30만원/년, 중학생 40만원/년, 고등학생 50만원/년
- 지원방식 : 지원금액 상당의 사용가능액이 탑재된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가능 가맹점에서 사용
- 사용가능 가맹점 : 온라인 학습, 온라인 진로·진학, 온·오프라인 도서, 진로체험 테마파크 중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등록 가맹점
- O 발급방법 : 소속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 행 일 : '20. 3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도내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시설개선 및 입주자격 완화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팀장 (710-8821)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제주 청년들을 위한 재경학사인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시설 개선 및 입주자격 완화로 입주학생의 만족도 제고

Ⅱ 사업개요

《탐라영재관 시설 개선》

O 개관 시 구매하여 내용연수가 지나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숙실 물품(책상·책장, 옷장, 신발장 등) 교체를 통해 입주학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입주학생 자격완화》

 ○ 최근 취업문제 등의 사유로 최종학기를 넘어 대학에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의 최종학기를 이수한 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함 ⇒ '20. 1. 모집공고 시 적용

■ 시 행 일 : '20. 1월 ~

- ❖ 탐라영재관 전 숙실 물품(책상/책장, 옷장 등) 교체
- ❖ 대학 수업연한의 최종학기를 넘는 학생도 입주 가능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장 (710-8861)

청년정책사업 참여청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여 청년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O 등록대상: 도내 거주 만19세 ~ 34세 청년
- O 등록방안
 -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제주청년 등록시스템 페이지 구축
 - 제주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청년 정보 수집
 - 수합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종 청년사업에 활용
- O 활용방안
 - 청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활동 기반 조성
 - 청년 정책 관련 의견 수렴 및 정책 홍보 활용
 - 청년 인적자원 POOL 구축을 통해 각종 위원회 등 자료로 활용
 - 청년 단체에 대한 자료 구축을 통해 청년단체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계획(안)

- O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 2020. 2월 ~ 8월
- O 제주청년등록시스템 등록 : 2020. 9월 ~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청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청년사업 참여자 체계적 사후 관리 실시 및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 활성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팀장 (710-2931)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

Ⅱ 사업개요(지원내용)

O 예 산 액 : 748,004천원(국비 50%, 도비 50%)

○ 지원대상 :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연령제한없음)

O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최대 17회)

O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10만원

O 지원항목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O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시행일 : '20. 1월

			기존	변경후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연령제한없음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7회(50만원)	110만원	90만원 - 40만원	
	선선배어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1~5회(50만원)	5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4 F\$\\F00\LO\	30만원	20만원	
		4~5회	1~5회(50만원)	20만원	20긴권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 운영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장 (710-2771)

중증치매 환자를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요양을 통해 조속한 증상 완화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

□ 사업개요(지원내용)

- O 운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운영방법 : 치매안심병동 51병상
- O 치매안심병원
 -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관리 할 수 있는 병원
 - *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에 동반되는 폭력, 망상 등의 증상
- O 우선 입원 대상
 - 급성으로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환자
 - 섬망(급성 혼란상태)이 동반된 치매환자
 - 행동심리증상이 악화되어 전문적 약물 및 비약물적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자신과 타인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
- II **시행일:** '20. 7월(예정)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치매안심병원 개소
 - (기존) 도내 공립요양병원과 치매전문 의료기관이 전무
- (변경) 치매환자의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전문병동에서 치료 제공
- 입원 후 개인, 집단 및 소그룹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프로그램(인지치료, 회상치료, 감각치료, 운동요법, 인정요법 등) 제공
- 가족을 위한 치매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정신질환자 응급병상 확보 및 응급개입 체계 마련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팀장 (710-2771)

정신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팀 운영 및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시범사업으로 정신응급환자 발생시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 지원 도모

□ 사업개요(지원내용)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 운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운영방법 : 급성기 병상 2병상 이상 확보

- 운영내용 : '급성기 집중치료병상' 중 2병상 이상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 운용

○ 정신질환자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팀 운영

- 운영기관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운영방법 : 주가 현장응급대응팀(2팀, 2인 1조) 구성 · 운영

- 운영내용 :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 도 단위의 주간 현장응급

개입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초기 대응 체계 마련

Ⅱ **시행일 :** '20. 1월(예정)

- ❖ 제주대학교병원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참여
- (기존) 응급입원 정신질환자 발생시 병실부족으로 입원조치 불가
- (변경)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으로 응급병실확보 및 응급입원체계 마련
- 정신의료기관의 병실부족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 등의 업무스트레스 과중됨에 따라 응급병실확보로 적기에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 도 단위 정신질환자 현장응급대응팀 운영
- (기존) 현장응급대응팀 미구성, 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급개입
- (변경)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 단위의 현장응급대응팀 구성·운영
- 도 단위의 현장대응팀 운영으로 응급개입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개입 도모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장 (710-2936)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O 분류체계 개편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개정 전) 제1군 ~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개정 후) 제1급 ~ 제4급감염병 총 86종

- ① 바이러스성출혈열(1종)을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 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O 급별 신고기간 변경

(개정 전)

구 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군 ~ 제4군감염병	지체없이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5군 및 지정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체없이	이상반응발생

(개정 후)

구 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제2,3급감염병	즉시 24시간 이내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시행일: '20. 1월

- ❖ (19년) 법정감염병 제1군 ~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 ('20년) 법정감염병 제1급 ~ 제4급감염병 총 86종

인플루엔지(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 확대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장 (710-2936)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확대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

□ 사업개요(지원내용)

- O 지원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 12세 어린이, 임신부, 중학생(1학년)
- O 사 업 비 : 3,41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O 사업기간 : 2020. 10월 ~ 2021. 4월
- O 접종기관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O 지원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 지원 백신 : 4가 백신

Ⅱ 시행일: '20. 10월

-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 확대
 ('19년)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 → ('20년) 중학교 1학년(추가)
- ❖ 지원 백신 확대 : ('19년) 3가 백신 →('20년) 4가 백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행

보건건강위생과 감염병관리팀장 (710-2936)

2019년 A형간염 환자가 '11년 전수감시 시작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주로 30~40대에서 발생함에 따라 항체양성률이 낮은 20~40대 만성간질환자 대상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A형간염으로 인한 사망 등 사전 예방 조치

□ 사업개요(지원내용)

- O 대상 :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 ~ 49세 성인 중 만성간질환자(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록자)
- O 시행기간 : 2020. 1월 ~ 2020. 12월
- O 시행방법
 - 대상별 2회 예방접종 지원 (1차 접종 후 6개월 이후 2차 접종)
 - 만20세 ~ 39세의 경우 검사없이 바로 접종
 - 만40세 이상은 항체검사 후 항체 음성자에게만 접종
- O 접종장소 : 보건소 및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O 예산액 : 152,800천원(국비 50%, 도비 50%)
- □ 시행일 : '20. 1월

- ❖ 만20세~49세(1970~1999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2회 실시
- * 만성바이러스성간염(B18),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K74) 등 만성간질환자

위생등급 지정 대상 확대

보건건강위생과 위생관리팀 (710-2941)

음식점 위생등급 적용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일반음식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모두 가능**

□ 사업개요(지원내용)

- O 목적 :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지정함으로서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확대
- O 지정절차

영업주		접 수		평가 총괄		현장 평가		등급 지정
(신 청)	\rightarrow	(시 위생 관리과)	\rightarrow	(도 보건건강 위생과)	\rightarrow	(전문기관 위탁)	\rightarrow	(도 보건건강 위생과)

- O 평가항목 축소 : 3개 분야 92항목 → 64항목
- 지원 : 지정서 및 표지판, 위생용품 등 지원, 홈페이지 홍보 등
- O 효과 : 소비자가 위생등급이 우수한 음식점 우선 선택

Ⅱ 시행일: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대상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확대

2020년 달라지는 소방 관계 법령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710-3543)

제천복합건축물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발생과 관련, 소방법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Ⅱ 사업개요

- O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연면적이 5,000㎡ 미만인 대상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의 셀프점검으로 부실점검의 원인
 - → 관리업자가 점검 할 수 있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자체점검(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마친후 30일 이내에 자체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관계로 불량소방시설을 수리・보수 등 정비하는데 최소 2~3개월 이상 소요
 → 제출기간을 단축하여 불량사항 신속 정비

※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소방시설법)

Ⅱ 시 행 일 : '20. 8월

- ❖ 종합정밀점검 대상 범위 확대
 -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이상 건물 (변경)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물
- ❖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소방관서 제출기한 축소(30일 → 7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도에서 일괄 추진

통상물류과 통상정책팀장 (710-2625)

각 행정시에서 지원되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20년부터 도 (통상물류과) 이관, 행정시 구분 없이 일괄 지원됩니다.

□ 사업개요(지원내용)

O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O 소요예산 : 2,104백만원

O 지원대상: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 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O 지원품목(예정): 정부품목(13개 부류) + 지자체 품목(4개 부류)

O 지원비율 : 농산물 표준물류비의 15%

Ⅱ 시 행 일 : '20. 1월

○ 대행기관 선정 및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모, 사업 집행 : '20. 1월 이후 상시 운영

- ❖ 2020년부터 수출물류비가 행정시에서 도(통상물류과) 이관, 추진됩니다.
 - (효과) 도 전체 균형 집행 및 연중 수출물류비 균형집행 등

제주형 사회적 농업 추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710-3021)

제주의 특성이 반영된 사회적 농장 지정(농장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치유·사회적응 등 자립 지원

Ⅱ 사업개요(지원내용)

O 사 업 량 : 사회적 농장 6개소

O 사업대상 : 농장을 소유(10년 이상 임대 포함)한 농업경영체,

농업법인,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O 사 업 비 : 439백만원(보조 400, 자부담 39)

- 사회적 농장 운영지원 : 327백만원(보조 300, 자부담 27)

- 사회적 농장 시설조성 : 112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12)

O 지원내용 : 운영비, 시설조성비

Ⅱ 시 행 일 : '20. 3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취약계층에게 농업활동으로 돌봄, 치유, 자립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710-3021)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농촌여성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농촌여성의 삶의 만족도 증진

□ 지원개요

○ 사 업 량 : 11,000명

○ 사 업 비 : 1,500백만원(자체재원 100%)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3만원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O 여성농업인은 농사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역할분담 과중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금액 상향(13만원 → 15만원), 지원대상 확대 (70세미만 → 75세 미만)을 통해 문화 활동 기회 증가

Ⅱ 시 행 일 : '20. 1월

-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 (현행) 지원액 13만원(자부담 없음), 지원대상 만 20세 이상 ~ 70세 미만
- (개선) 지원액 15만원(자부담 없음), 지원대상 만 20세 이상 ~ 75세 미만

친환경농산물 (학교·어린이집)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710-3161)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따른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및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 사용확대 유도

□ 사업개요(지원내용)

- 지원대상 : 814개소(어린이집 499, 유치원·학교 315)
- O 지원일수 : 학교 186일/년, 어린이집 250일/년
- O 지원단가(1인 1식 기준)
 - 학교 : 유·초 470원, 중 520원, 고·특수 570원 ※ 2019년도 : 유·초 450원, 중 500원, 고·특수 550원
 - 어린이집 : 280원
 - ※ 2019년도 : 270원
- O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 인증 농산물) 및 제주산 한우 1등급 ※ 도내산 친환경인증 농산물 우선 사용
 - 제주산 친환경인증농산물로 제주에서 제조된 가공식품
 - 제주산 감귤쥬스 및 축·수산물 우선 사용

□ 시 행 일 : '20. 1월

- ❖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단가 인상
 - (학교) 유치원·초등학교 450원→470원(↑20원), 중학교 500원→520원(↑20원) 고등학교·특수학교 550원→570원(↑20위)
 - (어린이집) 270원→280원(↑10원)
 - ※ 인상사유 : 물가인상률 반영

비인가 대연교 친환경농신를 ·무닝급식비지원 단가인상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710-3161)

공교육 제도의 사각지대인 비 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균형적인 심신발달 도모

□ 사업개요(지원내용)

- 지원대상 : 비 인가 대안학교 5개교
- O 지원일수 : 학교 186일/년
- 지원단가(1인 1식 기준) : 초 4,130원, 중 4,330원, 고 4,380원
 -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 초 470원, 중 520원, 고 570원 **※** 2019년도 : 유·초 450원, 중 500원, 고·특수 550원
 - 무상급식비 지원 : 초 3,660원, 중·고 3,810원 ※ 2019년도 : 초 3,550원, 중·고 3,700원
- O 지원품목
 -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 인증 농산물) 및 제주산 한우 1등급 ※ 도내산 친환경인증 농산물 우선 사용
 - 제주산 친환경인증농산물로 제주에서 제조된 가공식품
 - 제주산 감귤쥬스 및 축·수산물 우선 사용
 - 무상급식비 지원내용 :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 시 행 일 : '20. 1월

- ❖ 친환경농산물 및 무상급식비 통합 지원(인건비 포함) 및 지원단가 인상
 - 지원단가 : 초 4,130원(↑130원), 중 4,330원(↑130원), 고 4,380원(↑130원)
 -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 초 470원, 중 520원, 고 570원
 - 무상급식비 지원 : 초 3,660원, 중·고 3,810원
 - ※ 인상사유 : 학교 현실단가 및 물가인상률 반영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710-3161)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친환경 농업 실천 확대로 지하수 오염방지 기여

Ⅱ 사업개요

O 사업량: 864,000포

○ 사업비: 8,000백만원(농어촌진흥기금 4,000, 자부담 4,000)

※ 산출근거: 2018년 친환경·GAP 인증면적

• 인증면적: 6,172ha(친환경 2,123, GAP 4,049)

⇒ 인증면적에 따른 비료 소요량 및 지원금액: 864,000포(≒4,000백만원)

- O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GAP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 하고 있는 자
- O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품목: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공시된 유기질비료
 - 지원조건: (친환경인증농가)5,000원/포(20kg), (GAP인증농가)4,000원/포(20kg)
 - 지원한도: 친환경·GAP 인증면적 0.1~5ha 범위 내 지원
 - 지원기준: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 140포/ha

Ⅱ 시 행 일: 2020. 1.

- ❖ 친환경·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
 - 지원품목: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공시된 유기질비료
 - 지원조건: (친환경인증농기) 5,000원/포(20kg), (GAP인증농기) 4,000원/포(20kg)
 - 지원기준: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 140포/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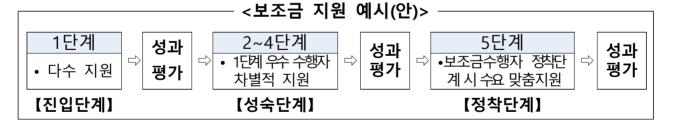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신규 지원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710-3051)

점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정착 초기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 성장 단계별 사업비 지원을 통한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O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내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자
 - 「제주특별자치도청년농업인 육성조례」에 의한 19세 이상 ~ 45세 이하 신규 또는 부모의 농업을 승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100%보조(정액) * 15명 × 1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기계·장비 임차수수료, 교육비 등
- O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6조
- O 추진계획
 - (<u>대상자 선정</u>) 공개모집(2월) → 선정심의회 구성 대상자 1차 선정(2월)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자 확정(3월)
- (성과평가) 시업지원 후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II **시 행 일 :** '20. 1월 ~

-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 농가당 10백반원 지원 및 성장 단계별 우수 수행자 지원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장 (710-3051)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정착 및 성장을 도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확대 하여 청년농 육성으로 농가 고령화 대응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

O 사 업 비 : 1,705백만원(국비 1,194, 도비 511)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30%

○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보료* 기준)

○ 의무사항 : 교육(136시간),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영농 유지, 성실신고,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 지원금액 및 기간(독립경영 연차별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차등 지원)

구 분	합계(천원)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독립경영 1년차	32,400	100만원/월	90만원/월	80만원/월
독립경영 2년차	20,400	90만원/월	80만원/월	_
독립경영 3년차	9,600	80만원/월	_	_

○ 지급 방법 :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자산취득 제외)

Ⅱ **시 행 일 :** '20. 1월

- ❖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 농한기(1년 최대 2개월까지)를 활용한 농외근로 허용
 - **영농창업자금 지원 조건 개선(**3억한도 연2%, 3년거치 7년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 **의무교육을 신규진입형, 성장형 구분개편 및 교육이수 시간 축소**(현 160시간→136시간) ※ 온라인 교육 인정시간 확대 : 선택교육시간 30% → 40%까지)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담당 (710-3151)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시설 관리기준과 안전교육 비중을 강화하여 농어촌민박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 주요내용

- O (시설기준 강화)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추가 설치 의무화
 - 화기취급처*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설치 시),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 · 주방 등
 - 주택 연면적 150㎡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 단. 150㎡ 이하인 경우 유도표지 설치 가능
 - 주택 연면적 150㎡ 초과 3층 이상 건물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O (서비스·안전교육 강화) 소방·안전 교육시간 비중 확대
 - (기존) 연 1시간 → (변경) 연 2시간
- Ⅱ **시 행 일 :** '20. 1월

- ❖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2020년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청 시 위의 추가 시설을 갖추어야 신고 가능합니다.
- ❖ 또한 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자도 위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

만감류 상품기준 설정

김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710-3271)

현행 한라봉에만 품질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소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생산자, 소비자, 유통조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라봉 외 3개 품 목에 대하여 상품 품질기준 설정

□ 사업개요

- O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21조 및 시행 규칙 제18조제4항 [별표3]
- O 만감류 품종별 상품 품질기준

구 분	당도	산도	규격	기타
한라봉	12° Bx 이상	1.1%이하	200g 이상	
천혜향	11° Bx 이상	1.1%이하	150g 이상	껍질뜬것,
레드향	11° Bx 이상	1.1%이하	150g 이상	결점과정도
황금향	10° Bx 이상	1.1%이하	150g 이상	

Ⅱ시행일: 2019. 12. 11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한라봉 외 만감류(천혜향, 레드향, 황금향)도 상품기준이 설정되어 시행(2019. 12. 11) 됩니다.

비상품 유통 등 과태료 1,000만원까지 상향

김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710-3271)

비상품 감귤 유통 등에 따른 감귤유통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000만원까지 상향

Ⅱ 사업개요

- O 추진현황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의견제출 : 2015. 3월
 -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영(제480조제2항1의2호 신설) : 2019. 12. 10
 - ·제주지역 생산농산물 수급안정, 상품성, 안전성 제공 유통 능률 도 조례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반기 중 의견수렴 후 개정
 -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 500만원 → 1,000만원

□시행일: 2020. 6. 11(예정)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비상품 감귤 유통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 일정 변경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진단과 동물보호팀장 (710-4065)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전염병 예방관리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일정 변경(축소) 추진

Ⅱ 사업개요

- O 입양일정
 - (종 전) 월·화·목·금·토 [1주 5일]
 - (변 경) 화·금·토 [1주 3일]
- O 입양시간
 - (평 일) 14:00~15:00 (개방시간 14:00~16:00)
 - (토요일) 11:00~12:00 (개방시간 11:00~13:00)
- ※ 동물보호센터 개방시간(변경 없음)에 유기동물 확인 및 소유자 반환 가능 (개방시간 : (월~금) 09:00~18:00, (토) 09:00~13:00)
- **Ⅱ 시 행 일 :** '20. 1. 1일

- ❖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입양일정 변경
 - [종전] 월·화·목·금(오후2시~3시), 토(오전11시~12)
 - [변경] 화·금(오후2시~3시), 토(오전11시~1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상향 지원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장 (710-3211)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어업인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직불금 상향 지원※ 어가당 직불금을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5만원 상향 지원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지원
 - *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자격은 조건불리지역 고시일부터 이행점검일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지원내용) 어가당 / 월 70만원

■ 시 행 일 : '20. 1월부터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액 상향 지원

○ 기존 : 어가당 65만원

○ 변경: 어가당 70만원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지원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장 (710-3211)

- ◇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 제공
- ◇ 내년 바우처 카드 비용은 현재 1인당 13만원에서 2만원 인상 하여 15만원 지원(2022년까지 20만원으로 인상 계획)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 어업인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만 70세 미만인 자
 -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O (지원내용) 1인 / 년 15만원
- 시 행 일 : '20. 1월부터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상향 지원 (기존) 1인당 년 13만원 (변경) 1인당 년 15만원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단가 상향 지원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장 (710-3216)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 되거나 금지된 어업자에게는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

Ⅱ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허가증을 소지하고 일본 EEZ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자
- O (지원 상한액) 척당 / 6,076천원
- **Ⅱ 시 행 일 :** '20. 1월부터

-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지원단가 상향 지원 (기존) 업종별 지원단가 달리 지원
 - 선망·<u>연승 척당/5,745천원</u>, 오징어채낚기·중기저인망 척당/4,530천원 등 (변경) 업종별 동일 지원 : 척당/6,076천원
 - ⇒ 우리도 연승어선 종전보다 척당/33만원 상향 지원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선장 승선경력 요건 신설 등)

수산정책과 어선어업팀장 (710-3216)

Ⅱ 개 요

- O (신고요건 강화)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상) 보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 (출항제한 구체화)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O (설비추가) 야간 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구조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므로 야간항행을 하는 낚시어선에 '구명조끼등'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항행 정의 및 각 설비 기준을 명확화

■ 시 행 일 : '20. 1월부터

- ❖ 신고요건 강화(안전성 검사, 선장 승선경력(2년 이상), 전문교육 이수
- ❖ 출항제한 조건 구체화(안개 등 출항제한 기준 명확화)
- ❖ 야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구명조끼등' 착용 의무화 등

양식산업발전법('19.8.27.제정) 본격 시행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장(710-3241)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 및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

□ 제정배경

-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내수)에 따라「수산업법」과 「내수면 어업법」으로 분리된 양식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
- O 양식업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기반 조성 및 육성의 어려움 해소
-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안함

□ 주요내용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해수부장관) 및 시행계획(도지사)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O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개발 등 면허양식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양식어업 등의 모든 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O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양식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양식산업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 전문인력 육성, 국제협력 촉진, 양식컨설팅・양식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시 행 일 : 2020. 08. 28.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제도 도입

해양수산국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장 (710-3221)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19.4.18.)에 따른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추진개요

○ 수립주체 : 해양수산부장관

*법률 시행에 따른 최초 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 그 이후 변경 수립 등은 도지사

○ 공간적 범위 : 제주 관할 영해구역 내

○ 시간적 범위 : 10년(2020 ~ 2030) 단위

○ 주요내용 : 제주 해양을 9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해양 공간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Ⅱ 시 행 일 : 2020. 하반기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 해양공간의 지속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제주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시행(2020. 하반기) 됩니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건축지적과 건축팀장 (710-3771)

공공건축 사업 전반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 건축 · 도시 등 관련 전문가가 공공건축 · 도시디자인 등 시업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 자문

Ⅱ 사업개요

- O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관련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조정 및 자문
- * 공공건축가 참여 의무대상 사업(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 국토교통부)
 - ㆍ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 사업
 - ⇒ 도시재생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300 등
 - ·설계비 1억원 이상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 ⇒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 O (총괄건축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 O (공공건축가) 공공건축 시업 조정 및 자문, 건축·도시 기획 및 설계업무 참여 등
- **Ⅱ 시 행 일 :** '20. 1월

- ❖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 사업부서 ⇒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 설계공모(도 건축지적과)
 - * 설계공모 대상 : 설계비 추정기격 1억원 이상(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 20.1.16. 시행)
 -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 ❖ '20. 1월 공공건축가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 사업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 사전 자문 및 지원 요청 (사업부서⇒건축지적과)
 - * 대상시업 : 도시재생뉴딜시업, 일반농산어촌개발시업, 어촌뉴딜300, 설계비 1억 원 이상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확대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장 (710-2691)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Ⅱ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아래 기간의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3. 1. 1. ~ 2019.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3. 1. 1. ~ 2019. 12. 31.(출생년월일 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
 - ※ 전년도에 지원 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연 1회만 지원)
- O 대상(임차)주택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Ⅱ 시 행 일 : '20. 1월

- ◆ 주택전세자금 <u>대출잔액의 1.5%(</u>최대 80만원→90만원) 확대 지원 (천원미만 절사)
 - ※ 단, 다자녀·장애인(중증)·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20만원→130만원) 확대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장 (710-2691)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며 도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Ⅱ 사업개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던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체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 O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한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 주거급여 선정 기준

- O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지원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 지원
 - * 장애인추가지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 고령자추가지원 :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Ⅱ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19년 44%→20년 45%) 이하인 가구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7호)

(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9년도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2020년도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종료

건축지적과 토지관리팀장 (710-2496)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기간 만료로 2019. 12. 31. 종료

Ⅱ 사업개요

- O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 한시적 완화 운영
 - 시행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부과면적 : 도시지역 1,500㎡이상, 도시지역 외 2,500㎡이상
- O 제도개선 취지
 -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 대두
- O 한시적 면적 완화 종료 사유
 -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의 토지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는 시행기간 만료로 금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Ⅱ 시 행 일 : '20년 1월 1일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

구분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도시지역 외 (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현행	1,500 m²	2,500 m²
변경	990 m²	1,650 m²

경시진 주차장 고임목 등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장 (710-2461)

2019. 12. 10. 국회 본회의에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부터 경사진 곳 주차장 안전시설 의무화

│ 주요내용

- ①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화
- ②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함
- ③ (지자체)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 실시 의무화
- Ⅱ 시 행 일 : 법 시행일

- ❖ (경사진 곳 주차장) 고임목 등의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판 설치
 - 이미 경사진 곳에 조성된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 시설 설치
 - 주차장 경사도 등 안전관리실태조사 의무화
- ❖ (후속조치)
 -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2020년 상반기중
 - 「주차장 경사도 안전관리실태 」 전수조사
 -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매년), 공영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2년)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산업팀장, 지원팀장 (710-2611, 2651)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에 따라 대수는 확대하나, 구매 보조금(충전기 포함) 단계적 축소, 기존 내연기관 차량 전환을 위한 특화된(폐차·수출말소) 보조금 정책 기조 유지 및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현황 등

Ⅱ 사업개요(안)

○ 사 업 명: '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O 지원대상 : 도민 및 도내 기업 등

O 지원대수 : 9,038대(승용 8,931, 화물 107)

O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O 접 수 처 : 도내 전기차 판매처(영업점)

O 지원내용(대당)

(단위 : 만원)	
화묵(추수형)	

구	분	승용	승용(초소형)**	화물(소형)	화물(경형)	화물(초소형)
7	계	1,300(차등)	820	2,500	1,600	912
	국비	800(차등)*	420	1,800	1,100	512
	도비	500	400	700	500	400

- * 전기승용차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상이
- ** 초소형전기차는 차고지증명제에서 한시적 제외
- 폐차 또는 수출말소 150만워. 전기화물차 200만워 추가 지원 등
- 세제혜택 **최대 530만원 면제**(개소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
- 시 행 일 : '19. 1월('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모시부터)

Ⅱ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안)
전기착구매	- 1,400만원 이내	- 1,300만원 이내
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 차종별 보조금 차등 지원
 	. 1기 최대 1,000만원 도비 지원	. 1기 최대 1,200만원 도비 지원
충전기 민간 사업자 보조	* 공동주택 10백만원, 편의시설 5백만원 도비보조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1기 최대 1,8만원	I 한국에되자이라 사려. 미국 박이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	- 공용 : 1기 최대 350만원 이내 - 비공용 : 1기당 130만원 이내 *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추진	- 공용 충전기 : 지원금액 미정 - 비공용 충전기 미지원 예정 * 환경밖한재동화환경합에서 20년도 지침 마련 예정
충전 1전 12급 특례요금제	. 기본요금 면제, 사용요금 50% 할인 * 2017년~2019년 3년간 한시적 적용	■ 전기요금 정상화★ 한전에서 확정요금 공시 예정

※ 2020년 전기차 보급대수, 구매보조금, 충전요금제도 등은 환경부에서 2020. 1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공원운영팀장 (710-7812)

세계유일의 4대 국제보호지역인 한라산의 적정 탐방을 보장하고 자연자원 보호 및 탐방객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 사업개요

- O 탐방예약제 시범운영구간 : 성판악 · 관음사 ~ 정상
 - 1일 예약인원 :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
- O 운영기간 : 2020. 2월 ~ 12월
- O 예약방법: 인터넷·전화 ※ 예약인원 미달 시 현장발권도 가능
 - 성명, 거주지역(시·도), 연락처 등 간단한 사항만 입력
- O 참고사항
 - 예약 한 달 전 접수를 받으며, 단체는 1인 10명까지 예약가능
 - ※ 시범운영 기간 중 성판악 · 관음사 코스는 사전 예약해야 등반 가능하며어리목 · 영실 · 돈내코 코스는 예약 없이도 등반가능
- □ 시 행 일 : '20. 2월~ 12월

- ❖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음사 ~ 정상코스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시스템(https://visithalla.jeju.go.kr)
 - 성판악 코스 : 1,000명, 관음사 코스 : 500명
 - 예약방법 : 인터넷·전화 ※ 예약인원 미달 시 현장발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생활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장 (710-311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이전 경유차 등) 운행시에 과태료 부과예정('20. 7월 예정)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O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 발령기준(PM2.5) : 아래 중 어느 하나 충족시 발령

① (실측) 오늘 0~16시(평균) 50µg/m³ 초과

(예보) 내일(평균) 50μg/m³ 초과

② (실측) 오늘 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예보) 내일(평균) 50μg/m³ 초과

③ (실측)

(예보) 내일(평균) 75μg/m³ 초과

O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구축사업

- 사 업 비 : 955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1. ~ 6.

- 설치장소 : 제주도전역(교통량 많은 지역 등 30개 지점, 50대)

O 단속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2005년 이전 경유차 등)

※ 제외대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친환경차량 등

O 적발차량 : 과태료 10만원 부과

Ⅱ 시 행 일 : '20. 7월(예정)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 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장 (710-3416)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 분야 향유 기회 제공으로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연 9만원 지원 확대)

※ 사업시행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및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침

Ⅱ 사업개요

- O 사 업 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 O 사업예산: 1.936백만원(국비 1.345, 도비 591)
- O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6세 이상)
- O 지원금액: 1인당 9만원(작년 대비 1만원 상승)
- O 사 용 처: 제주지역 가맹점 738개소(2019. 12월 기준) 및 온라인가맹점
 - ※ 문화(서점, 영화관 등), 관광(항공, 숙박 등), 체육(스포츠관람 및 체육시설 등)

Ⅱ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1인당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19. 연 8만원 → '20년 연 9만원)

제주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부감면(75%)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710-3451)

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일부 감면이 시행됨에 따른 고부가 가치 골프관광객 유치 계기 및 지역기반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파급효과 창출

□개별소비세 등 과세액 부과 내역

<단위 : 천명>

구 분		소계 회원기		하이게 미즈게	개별소비세 등 과세액(%)		
	正	<u> </u>	회원제 대중제		전 국	제 주	
					24,120원/100%부과	5,280원/25%부과	
도니 골프	`	30	19	11	 ▶ 개소세 : 12,000원 ▶ 교육세 및 농특세 : 각 3,600원 ▶ 부가세 : 1,920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 3,000원 	 개소세 : 3,000원 ▶교육세 : 900원 ▶동특세 : 900원 ▶부가세 : 480원 ▶국민체육진흥기금 : 면제 	

- 최근 국가경제 투자, 수출부진 지속으로 내수경기 침체, 일자리 창출제한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주지역 회원 제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일부 감면 추진
 - 2019. 12. 10. 국회 본 회의 관련법제정 등 심의안건 통과
- Ⅱ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일부 감면 (당초 : 21,120원 → 20. 1월부터 : 5,280원 부과)

2020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710-3451)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 해 추진하는 사업

Ⅱ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및 범죄피해가구 내 만 5~18세 유·청소년
- O 지원내용
 - 1인당 월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8개월이상 지원)
 -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유・청소년 대상 균형 지원
- O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 O 지원 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 발급

Ⅱ 시 행 일 : '20. 1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존 1인당 연간 최소 7개월 이상 지원에서 8개월 이상 지원으로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카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카드발급기간이 7일→3일로 단축됩니다.

2020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710-3451)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지급함으로써, 장애 인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

Ⅱ 사업개요

- O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중 만 12~39세 저소득층 장애인
- O 지원내용
 - 1인당 월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연간 8개월이상 지원)
 -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의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 O 사업기간
 - 2020년 3월~12월
- O 지원 방법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 발급
- Ⅱ 시 행 일 : '20. 3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존 1인당 연간 최소 7개월 이상 지원에서 8개월 이상 지원으로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카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카드발급기간이 7일→3일로 단축됩니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4·3지원과 4·3지원팀장 (710-843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통합에 기여하고 고령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4 · 3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 O 지원내용
 - 생존희생자 : 매월 70만원 지급
 - 희생자 배우자 : 매월 30만원 지급
 - 유족 : 매월 10만원 지급(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 한함)
- 지원근거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 O 신청기간 : 상시
- O 신청장소
 - 도내 거주자 : 주소지 읍 면 동
 - 도외 거주자 : 원적지 관할 읍 면 동
- O 구비서류 :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통장사본 각 1부
 - ※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는 해당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시 행 일 : 연중

- ❖ 생존희생자 및 만 75세 이상이 되는 기존 및 신규 결정 유족분들은 주소지 읍면동으로 생활보조비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부터는 1945년생 유족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 예시) 1945년 6월생인 자는 2020년 5월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활보조비 지급은 생일이 속해있는 6월달부터 지급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지원표시) 의무화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장 (710-2321)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 사업장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공익성 향상

Ⅱ 사업개요

- O (설치 목적)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한 운영 및 공익성 향상
- O (설치 대상) 건당 500천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
 - * 제외대상
 -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 2년 이상의 교육기관 및 해당기관 부설연구소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단.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단체 차량은 표시 대상)
- (설치 유형)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차량, 물품 및 장비,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표시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Ⅱ 시 행 일 :** '20. 1월

- ❖ (행정기관)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 의무 통지 및 사후 정산 시 설치 및 지원표시 여부 확인
- ❖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및 지원표시 의무화

2020년 민수용 도시가스(LNG) 공급 전환

저탄소정책과 한제택 팀장 (710-4411)

기존 도시가스 LPG+Air 방식에서 LNG(천연가스)로 공급 전환됩니다.

※ 이외 나머지 세대(읍 • 면지역 포함)에는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할 계획임.

Ⅱ 사업개요

- O 대 상 : 현재 도시가스 배관 연결된 공동주택, 특정사용시설 등 약 31,300세대
 - * 현재 도시가스 배관 연결 안 된 곳은 ㈜제주도시가스와 공급 협의해야 함.
- O LNG 공급 전환 시기 : '20. 3월중
- O LNG 공급 전화 前·後 주체별 해야 할 사항.
 - < LNG 공급 전환 前 >
 - ㈜제주도시가스측에서는 LNG 공급 전환 前 가스검침을 위한 검침원 세대방문 실시
 - 사용자측에서는 가스보일러 내부청소 및 AS 센터를 통한 사전 정기점검 실시
 - < LNG 공급 전환 後 >
 - 사용자측에서는 가스누설경보기 검지부 위치변경(低→高) 및 호환성 확인
 - * LNG는 기존 LPG와는 달리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가스누설경보기 검지부가 높은 곳에 있어야 함.

Ⅱ 시 행 일 : '20. 3월 중

- ❖ 민수용 LNG 공급전환에 따라 요금체재 개편(구간・사용량→용도별 요금)
-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에게 설치비용 일부 분담케 하는 수요가 시설분담금을 고시하여 부과할 예정
 - * 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국가유공자 등 수당 상향 및 지원 확대

제주보훈청 보상과장 (710-8421)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적정한 보상과 예우를 통한 복지증진 도모

Ⅱ 사업개요

- O 참전명예수당 인상
 - 만65세 ~ 79세이하 : 월 9만원(현행과 동일)
 - 만80세 이상 : (현행) 월 15만원 → (상향) 월 20만원
- O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지원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지원금액 : 매월 6만원
- O 현충수당 신설
 - 지원대상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

- 지원금액 : 연1회 10만원(매년 6월 5일 지급)

Ⅱ **시 행 일 :** '20. 1월

- ◆ 만80세 이상 참전명예수당 인상 : (현행) 월 15만원 → (상향) 월 20만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신설 : 매월 6만원
 ※ 보훈예우수당 수령자는 제외
- ❖ 현충수당 신설 :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 연1회 10만원(매년 6월 5일 지급)
 - ※ 지급대상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18자유상이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